



## 양돈단지 조성사업 중간 평가

### 1. 양돈단지 조성목적

환경문제로 인하여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도시화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양축 시설을 단지화에서 생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축사부지의 공동확보와 시설배치의 효율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양관리, 자재의 공동구매 및 공동출하 체계 구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조 및 용자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공동관리, 구·판매, 효율적인 시설배치 등을 유도한다.

### 3. 사업계획

이미 '91년에 4개소, '92년 11개소의 양돈단지가 추진중이다. 축산단지 조성 사업주체는 농림수산부이고 사업기간은 '93~'94년간이며 사업량은 27개소이다. 지원대상은 젓소, 돼지, 닭사육 농가중 단지를 조성, 입주 희망하는 농가이다.

총사업비는 540억원이며, 사업비 지원내용은<표 1>과 같다.

## 정부의 양돈단지 조성계획과 추진현황

### 4. 세부실천요령

1) 지원대상단지 선정 : 도 지사가 한다.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단지규모 - 단지당 5~20호 이내

① 농가규모 - 돼지사육 농가당 모돈 50~200두 규모

### 2. 추진방향

부지확보 농가(단지)에 축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5호 이상 농가가 공동으로 단지조성시 지방비 보

홍 보 부

<표 1> '93년도 축산단지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계	지방비 보 조	기 금 용자	자 담
계	개소 27	54,000 (100%)	2,700 (5)	37,800 (70)	13,500 (25)
- '93사업비 (1년차)	27	28,350	2,700	18,900	6,750
- '94사업비 (2년차)	(27)	25,650	-	18,900	6,750
(개소당 총사업비)		(2,000)	(100)	(1,400)	(500)

의 일괄사육 형태

### 3) 신청절차

① 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축종별 사업대상자와 입주대상자 선정 등 단지 규모를 확정하고 기반시설 지원에 위한 지방비를 확보한 후 사업계획서를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

— 도지사는 단지당 100백만원 이상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한다(폐수처리시설 등 공해방지 시설, 도로개설비 등 기반시설비에 사용토록 지원한다.)

— 은행감독원의 여신규제 대상자가 아닌 농가로 한다.

— 입주 대상자는 인근마을 양축농가 위주로 선정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지 선정, 입주대상농가 선발 및 시설배치 등에 대하여 지도 또는 자문한다.

③ 사업계획서 내용

— 부지에 관한 사항(위치, 면적, 소유권 등 내용)

— 입주대상 농가내역 및 양축규모

— 지방비 확보 내역서

— 시설내역 및 예산내역(토지

구입비, 가축비, 운영비는 제외)  
— 단지내 축사 및 부속시설(주거시설 포함) 등 배치도

④ 농림수산부장관은 도지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확정하고 축협중앙회에 통보한다.

⑤ 축협중앙회장은 지원대상자에 지원자금을 배정하고 사후관리한다.

### 4) 자금용도

단지내 축사신축, 자동화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등에 사용한다.

### 5) 용자조건

① 용자한도는 참여농가수, 축종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단지당 총용자액은 14억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용자비용은 농가당 시설비의 70% 이내로 한다.

③ 용자취급기관은 축협중앙회

④ 용자대상자는 도지사가 선정한 축산단지 입주 대상자

⑤ 지방비는 단지 규모 비율에 따라 조정 지원한다.

### 6) 채권보전

① 도지사가 선정한 축산단지 조성 사업자에 소요자금의 10% 범위내에서 사업착수자금으로 우선 용자조치할 수 있으

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리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해 여신관리를 한다.

② 용자 취급기관에서는 축산단지조성 사업자의 부동산 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될 수 있도록 농가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담보 문제로 사업 지연등이 없도록 조치한다.

### 7) 사후관리

① 사후관리는 도지사가 책임을 진다.

② 사후관리절차

— 도지사는 부지 및 축사시설을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 및 등기토록 지도한다.

— 축산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이주한 이후에는 기존사업장을 폐쇄 또는 철거시키고, 지원된 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일체의 매매거래가 되지 않도록 입주자 개개인에 대한 관리조건을 부여

— 도지사는 축사신축허가 등 제반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단지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을 거쳐 용자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축협도지회장은 여신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기성고(도지사가 통보한 확인서)에 따

특집 / 양돈단지 조성사업 중간 평가

〈표 2〉 양돈단지 선정현황('91~'92)

(단위 : 백만원)

도별	지원 년도	단지위치	규 모		지원액		재원
			농가수	사육규모	지방비	기금용자	
경기	'92	평택 서탄 마두	호	천두	백만원		축진
	'92	안성 고산 신창	10	10	100	1,400	축진
강원	'92	화천 사내 명월	10	10	100	1,400	농발
	'92	양구 남면 창리	10	10	100	1,400	농발
충북	'92	음성 금왕 호산	10	10	100	1,400	농발
충남	'91	논산 광석 중리	14	14	100	1,400	축진
전북	'92	장수 계남 호덕	10	10	100	1,400	축진
	'92	정읍 덕천 달천	20	10	100	1,400	축진
전남	'91	합평 해보 상고	12	10	150	1,400	축진
	'91	나주 반남 청송	11	10	150	1,400	축진
경북	'91	고령 우곡 대곡	20	20	100	1,400	축진
	'92	안동 와룡 서현	10	10	140	1,400	축진
경남	'92	합천 야로 나대	20	20	100	1,400	농발
제주	'92	북제주 애월 광령	13	10	100	1,400	농발
	'92	서귀포 대포	10	10	100	1,400	농발
계	'91	4개소	57	54	500	5,600	
	'92	11개소	133	120	1,140	15,400	

\* 재원별 : 축진기금 8개소, 농발기금 7개소

〈표 3〉 '93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총 사업비				단지당 사업비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보조	용자	자담
27개소 (도당 3개소)	54,000	2,700	37,800	13,500	2,000 (100)	100 (5)	1,400 (70)	500 (25)

〈표 4〉 '93 양돈단지 선정실적

도별	단지위치	규 모		지원액		재원
		농가수	사육규모	지방비	기금용자	
경기	양평 양동 계정	10	15	100	700	축진
	이천 백사 모전	14	10	100	700	축진
	용인 외사 옥산	14	11	100	700	축진
충북	옥천 청산 인정	8	10	100	700	축진
충남	당진 석문 초락도	10	10	100	700	축진
전북	정읍 감곡 방모	10	10	100	700	축진
	옥구 서수 관원	12	12	100	700	축진
전남	화순 화순 단지	11	10	100	700	축진
경북	선산 옥성 산촌	10	10	140	700	축진
경남	양산 산북 좌삼	10	10	100	700	축진
제주	북제주 한림 금악	8	10	100	700	축진
	북제주 한림 금악	9	10	100	700	축진
계	12개소	115	118	1,140	7,700	

\* '93년 사업의 경우 용자액은 '93년 7억, '94년 7억원씩 분리 확보지원 계획

라 지원자금을 대출하고 농가별 대출사항을 도지사에 보고한다.

-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는 지원자금을 회수(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도지사 책임하에 협의회 등을 거쳐 타당성 검토후 변경추진, 용자기관에 동 내용통보)한다.

### 5. 양돈단지 추진현황

'91~'92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91년에 4개소, '92년에 11개소에 지원되었으며, 지원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년리 5%이다. 지방비가 1개소당 1억원 지원되고 기금용자는 1개소당 14억원이 지원된다.

용자재원은 축산진흥기금, 농발기금이다.

### 6. '93~'94 축산단지 사업

용자재원은 축산진흥기금으로 조달하며 지원조건은 보조가 지방비 1억원, 용자는 축진기금 14억원 이내로 '93, '94년 각각 50%씩 지급)하고 용자기간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년리 5%이다.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